

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 (A)	회사명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기업 구분	
		[] 수요기업 [] 국내복귀기업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	담당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
신청인 (B)	회사명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기업 구분	
		[] 수요기업 [] 국내복귀기업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	담당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
협력관계 주요내용	기업 간 주요 협력내용
	물품 공급·수요 [] 서비스 공급·수요 [] 공동 연구개발 [] 기타 []
	협력내용별 목표 및 향후 계획

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.

이
이
이

신청인(A) 대표자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(B)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

귀하

첨부서류

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, 물품공급계약서, 서비스제공 계약서,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 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처리절차

